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853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62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 8. 29.과 2015. 11. 30. 이 사건 각 토지에 장뇌삼을 파종하여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6에서 13, 15, 16, 17, 21에서 26호증, 을 제2, 7, 1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 이 법원의 증인 E,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장뇌삼 재배)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14. 11. 4.과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특용작물인 허브를 재배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G은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장뇌삼을 심으면 상당한 소득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뇌삼을 심기로 결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 원고는 2015. 6. 중순 무렵 이미 이 사건 각 토지 입구에 '이곳은 원고가 장뇌삼 재배지로 사용하는 토지이니 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았고,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2015. 6. 23. 이 사건 각 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1]에도 위 현수막에 관한 기재가 있다.

○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소개로 강원도 횡성군과 경기도 광주시에서 대규모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는 E를 알게 되어 E의 도움을 받아 인부 3명(I, D, J)을 써서 2015. 8. 29.부터 3일간 장뇌삼을 파종하였다.

○ G은 위 장뇌삼 파종을 위하여 2015. 7. 말 F으로부터 장뇌삼 씨앗 3kg 매입대금 120만 원을 빌려 씨앗을 구매하였고, 그 후 2015. 11. 11. F의 계좌로 위 돈을 갚았다.

○ 그리고 원고는 장뇌삼의 생존율이 낮아 위와 같이 2015. 8. 29. 무렵 파종한 장뇌삼 씨가 잘 자라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5. 11. 29. E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1년생 장뇌삼의 묘삼을 심었다.

○ 2016. 5.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1, 2년산 장뇌삼이 자라고 있었다.

○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2015. 11. 26.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2]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로 제초, 개간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다시 2016. 1. 29.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3]에 의하면 원고 측이 장뇌삼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는 5~6지점에서도 장뇌삼 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장뇌삼은

1) 을 제7호증
2)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자연림 상태에서 재배되므로 장뇌삼을 심기 위하여 개간을 하지는 아니하고, 장뇌삼은 낙엽이 쌓여 부스러진 부엽토에서 자라므로 장뇌삼을 심기 위해서는 토양 위에 있는 낙엽을 쓸어내고 고랑을 파서 2, 3알 정도의 씨앗을 심은 다음 부엽토와 낙엽을 다시 덮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2016. 1. 29 무렵은 한겨울이라 땅이 얼어 깊이 파내기 어렵고, 장뇌삼 씨가 작고 흙색인 까닭에 파종된 장뇌삼 씨를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의 위 출장조사결과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장뇌삼 씨를 파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처 분 목 록

단위: 원

과세대상 취득물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이 사건 1 토지	70,409,600	17,947,400	10,561,440	579,820	1,760,240	96,630
이 사건 2 토지	20,240,000	4,819,140	3,036,000	115,670	506,000	19,270
합계	113,416,140		14,292,930		2,382,1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